



등 록 번 호 : 20200654
최초 등록일 : 2020-05-22
최종 등록일 : 2025-05-12

e-mail :
ecofoodsyst@daum.net

에코푸드시스템

정 보 공 개 서

(주)에코푸드시스템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5. 04. 01.

(주)에코푸드시스템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 대촌1길 8-2, 1층 (사사동)

전화번호 : 1899-8092

팩스번호 : 031-419-5522

담당부서 : 영업팀 T.031-419-7728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에코푸드시스템]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에코푸드 시스템	에코푸드시스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대촌1길 8-2 (사사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이사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8. 12. 06.	2018.12.12.	김종표	1899-8092	031-419-5522
	법인등록번호	131411-0423980	사업자등록번호	731-81-01174	

2.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사촌	김종걸	에코푸드시스 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대촌1길 8-2 (사사동)		
			대표이사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종표	1899-8092	031-419-5522
사용인 (임원)	유중선	에코푸드시스 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대촌1길 8-2 (사사동)		
			대표이사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종표	1899-8092	031-419-5522
사용인 (임원)	유중선/ 엔에이치푸드 (인천점)	에코푸드시스 템	인천광역시 남동구 오봉로 15, 주공그린빌2단지 상가 102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유중선	032-423-7503	0504-483-0822
배우자	소혜란/ 바른푸드 (바른점)	에코푸드시스 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로 209, 2층 (당수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소혜란	031-419-7722	031-419-5522
형	김태영/ (주)티앤비코리 아	누나홀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9, 3층 (자양동, Y tower)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태영	02-797-9959	02-797-9951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에코푸드시스템]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에코푸드시스템	친환경 (간식)급식을 추구하는 유통시스템을 뜻함.
상 호	에코푸드시스템 OO점	사업자등록을 하는 상호는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상호를 등록함.
상표(로고)		

에코푸드시스템은 영업표지 홍보를 하고 사진 등의 자료도 첨부합니다.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VAT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810,355	397,044	413,310	3,182,933	119,261	102,922
2023년	1,393,399	507,833	885,566	5,431,024	536,111	472,255
2024년	1,884,527	519,729	1,364,798	5,548,839	545,244	479,232

그 근거자료는 <별첨 1-1> 및 <별첨 1-2>와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VAT 미포함)

영업표지	연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매출액	상한	하한
에코푸드시스템	2022년	1)의 매출액과 같음		
	2023년	1)의 매출액과 같음		
	2024년	1)의 매출액과 같음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종표	대표이사	2015.09.~2018.11.	바른푸드 직원	영업
			2018.12.~현재	(주)에코푸드시스템 대표이사	회사 업무 총괄
	김종걸	이사	2017.02.~2018.12.	바른푸드 직원	영업
			2019.01.~현재	(주)에코푸드시스템 이사	가맹점 관리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유중선	이사	2017.04.~현재	(주)에코푸드시스템 이사	
	장주현	이사	2019.01.~현재	(주)에코푸드시스템 이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2	2	2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특수관계인 (형)	(주)티앤비코리아/ 김태영	가맹사업 경영	2011.06.~현재	누나홀닭(등록번호:20110100603)이라는 영업표지의 치킨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에서 등록 및 등록신청한 지식재산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에코푸드시스템]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10	1	-	-	-	11
2023	11	2	-	-	1	13
2024	13	5	-	-	2	18

[에코푸드시스템]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지를 확인하십시오.

6. [에코푸드시스템]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에코푸드시스템]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특수관계인 (형)	(주)티앤비 코리아	누나홀담	20110100603	치킨	229 / 1	247 / 1	258 / 1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에코푸드시스템]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VAT 미포함)

지역	2024년 말 가맹점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18	391,683	31,938	771,991	77,199	90,600	6,953	
서울	2	654,780	65,478	757,817	75,782	551,744	55,174	5개 사업장 미만

부산	-							
대구	-							
인천	1							5개 사업장 미만
광주	-							
대전	1							5개 사업장 미만
울산	-							
세종	-							
경기	10	305,266	26,588	771,991	77,199	90,600	6,953	
강원	-							
충북	1							5개 사업장 미만
충남	3	572,018	31,115	890,360	58,764	346,012	34,601	5개 사업장 미만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가맹점 매출의 100%가 학교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매출이므로 POS(Point of Sales)와 같은 객관적인 매출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맹점 매출액을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습니다.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매출액 = 당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 공급액 × 추정비율(120%)]

당사에서 제공하는 간식식단표가 가맹점에 20% 정도의 매출이익이 발생되도록 하였으므로 이를 역산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하남점은 2025년부터 매출이 발생하므로, 합산 및 평균에서 제외하고, 17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합산 및 평균을 산출하였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에코푸드시스템]으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에코푸드시스템]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에코푸드시스템]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18	1313 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에코푸드시스템] 지역사무소를 운영하지 않으며, 가맹본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4년에 [에코푸드시스템]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영업 특성상, 가맹본부의 광고와 판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신한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주)신한은행	상록수 지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54, 신안프라자 (본오동)	031-407-4922

* 예치금융회사 : 신한은행 상록수지점

계좌번호 : 140-013-983882 예금주 : 주식회사에코푸드시스템 김종표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귀하는 가맹금을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및 영업개시일 10일 이전에 (주)신한은행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 2) (주)신한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설치한 후 “신한가맹금 예치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에코푸드시스템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3) 예치금의 지급보류, 지급승인, 환불요청 등의 관리 업무는 귀하가 직접 등록 하여야 하며,

신한은행 영업점에서는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또한 (주)신한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추후 가맹점 계약 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에코푸드시스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VAT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5,500]				
가입비	3,300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및 영업개시일 10일 이전	영업 개시 10일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교육비	2,200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7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 천원, VAT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30,000]			
(현금)보증금 또는 물적담보	30,000	영업개시일 10일 이전	상품 등의 대금과 관련한 채무 및 손해배상	매년 11월의 상품 등의 대금으로 담보설정금액을 재평가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단위 : 천원, VAT 포함)
합계	35,500
가입비	3,300
교육비	2,200
(현금)보증금	30,000 (VAT 없음) 물적담보로 대체 가능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VAT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0				
필수설비(정착물)		0				냉장고, 냉동고 등 필수 설비는 가맹점사업자 가 자체 조달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0				인테리어 필요하지 않음
최초 공급 상품 비용		0				가맹점의 발주에 의해서만 상품이 공급됨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0				없음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담당자 배정 →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입지를 제안 → 담당자가 현장 조사를 통해 적정성을 검토 → 가맹희망자가 입지를 결정 ※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입지가 소매업 및 창고 용도로 문제가 없다면 가맹 본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보건소 위생교육 및 보건증 발급	1종보통 운전면허증 필수 만 18세 이상일 것
종업원	보건소 위생교육 및 보건증 발급	1종보통 운전면허증 필수 만 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에코푸드시스템]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4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없음]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당사에서 수취하는 차액가맹금은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시설 관리	냉장고, 냉동고 등의 위생 상태 및 품질을 점검	수시	문의 : 영업팀 (031-419-7728)
상품 관리	상품의 유통기한, 위생 상태 및 보관 상태를 점검	수시	문의 : 영업팀 (031-419-7728)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 귀하가 당사에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귀하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귀하는 당사에 지식재산권 사용료를 지불하기

않으므로 귀하는 당사에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귀하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는 당사에 가맹금을 지불하지 않으므로 귀하는 당사에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에코푸드시스템]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는 사전에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양수인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공한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귀하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는 귀하의 발주에 의해서만 상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귀하가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당사와 협의합니다.

V.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에코푸드시스템]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과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에코푸드시스템]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상품은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에코푸드시스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장려금)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당사가 [에코푸드시스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 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 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당사가 매월 공지하는 식단표에 따른 상품	변경 시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을 요함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당사는 매월 식단표를 공지하며, 귀하가 공지된 식단표에 따라 돌봄교실 등에 상품 (간식)을 납품할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귀하가 공지된 식단표를 변경하여 납품을 할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서만 상품·용역을 판매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 돌봄교실 - 유치원 - 지역돌봄센터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모든 상품	손해배상	지정된 거래상대방 외에 공급된 상품 가액의 2배의 금액을 가맹본부에 위약벌로서 배상하여야 함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 외에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당사에서 공급하는 상품에 대하여 유통질서를 해치지 않기 위해 공급업체와 당사가 체결한 거래계약에 따른 사항입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식단 가격에 따라 그 식단을 구성하는 상품을 매월 식단표로 공지하고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단위 : 원, VAT 포함)	가격 통보 방법	비고
1500원 식단	1500	매월 식단표	
2000원 식단	2000	매월 식단표	
2500원 식단	2500	매월 식단표	

돌봄교실 등의 납품 가격이 개별 품목으로 정해지지 않고, 1명 1식 기준으로 납품가가 정해지는 관계로, 매월 식단의 종류별로 돌봄교실 등에 납품할 품목을 결정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돌봄교실, 유치원 및 지역돌봄센터에 간식을 제공하는 업종	에코푸드시스템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 계약 시 협의	가맹계약서 별지에 행정구역으로 표시 (지도 별첨을 하지 않음)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귀하 및 다른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해당 영업지역영업지역이 충돌되는 경우 ②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대한 시장점유율이 현저히 감소하여 영업지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에코푸드시스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및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

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100%	0%	0%	0%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에코푸드시스템]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 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 년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D-180 ~ D-90

예→②, 아니오→⑦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4조 ①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4조 ①항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4조 ①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 및 운송 방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4조 ①항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4조 ①항
○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4조 ①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③항에 따라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귀하에게 거절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④항에 따라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당사가 귀하에게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귀하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당사나 귀하에게 천재지변이나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첫째, 당사나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둘째, 당사나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셋째, 귀하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불해야 할 상품 등의 대금 및 기타 금전 채무의 납입을 불이행, 거부, 해태한 경우	35조 ①항
○ 가맹점사업자의 시설, 차량, 장비,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또는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히 지장되어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5조 ①항
○ 가맹점사업자가 채무액 및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35조 ①항 18조 ①②③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주최하는 회의, 교육 등에 사전 통보 없이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	35조 ①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명시적인 서면동의 없이 가맹본부가 아닌 제3자로부터 제·상품을 매입하는 경우	35조 ①항 23조 ③항
○ 가맹점사업자가 돌봄교실 등의 간식 납품에 제한된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유통질서를 해친 경우	35조 ①항 24조 ①②③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 등의 사용에 대한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5조 ①항 25조 ①②항
○ 가맹점사업자가 “아이쿱친환경급식” 상품 납품 및 “자연드림” 브랜드 사용에 대한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5조 ①항 26조 ①②항
○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35조 ①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35조 ①항
○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35조 ①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회계장부, 기록, 계산서, 거래처 정보 등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이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불이행, 거부 또는 해태한 경우	35조 ①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회계장부, 기록, 계산서, 거래처 정보 등에 대한 서류 및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가맹본부에게 허위로 보고한 경우	35조 ①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35조 ①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활동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 영업지역에 위치한 거래처 등에 대해 영업이나 사업을 고의로 중단하거나 포기한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	35조 ①항
○ 가맹점사업자가 중죄 또는 가맹본부 또는 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범죄행위를 범하여 수사기관의 유죄선고를 받은 경우	35조 ①항
○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35조 ①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

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5조 ②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35조 ②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5조 ②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5조 ②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5조 ②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계약의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35조 ②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5조 ②항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35조 ②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5조 ②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36조 ①항

재조정 절차	동의 및 수정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가맹본부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계약 수정	- 가맹본부가 수정계약서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 후 30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가 동의 여부 회신 -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후 15일 이내에 수정계약서 서명 -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 수정 없음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 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의 양수·양도 계 약 체결 및 양수인과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체결 (14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 영업팀 (031- 419-7728)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양수인과 당사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본부는 영업의 상속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점포운영교육 이수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대리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해당없음]
업무위탁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수탁자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해당없음]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서에 별첨된 영업지역 내에서 귀하가 [에코푸드시스템]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돌봄교실, 유치원 및 지역돌봄 센터에 간식을 제공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가맹본부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6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 영업팀 (031-419-7728)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에코푸드시스템]의 영업시간은 제한하지 않고 영업일수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해당없음]	가맹점사업자가 간식 급식을 하는 돌봄교실 등의 운영일에는 반드시 영업 및 급식을 해야 함	문의 : 영업팀 (031-419-77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를 권장합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지 않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돌봄교실 간식 납품이라는 [에코푸드시스템]의 영업 특성 상, 가맹본부에서 별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하지 않으며,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에코푸드시스템]의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리플렛, 제안서 및 식단표 등 모든 광고물 및 판촉물에 관하여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당사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귀하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귀하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행위로 귀하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행위	관련 계약조문
○ 당사가 귀하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0조 ②항
○ 당사가 귀하에게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0조 ②항
○ 당사가 귀하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	40조 ②항
○ 귀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당사가 귀하에 대하여 상품·용역의 공급이나 경영·영업활동 지원의 중단, 거절 또는 제한, 가맹계약의 해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 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당사의 위반행위의 신고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40조 ②항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의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VAT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63일 내외	35,500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63 ~ D-57	
사업 설명·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D-56 ~ D-50	
입지 선정	- 가맹희망자가 입지 제안 - 현장 조사 및 적정성 검토 - 입지 선정	D-49 ~ D-36 (14일)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6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 신한은행에 가맹금 예치 계약	D-35 ~ D-29	
교육비 납부	- 교육 시작 7일 이전에 납부	D-35 ~ D-21	2,200
가입비 납부	-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및 영업개시일 10일 이전	D-35 ~ D-15	3,300
(현금)보증금 또는 물적담보 제공	- 영업개시일 10일 이전	D-35 ~ D-10	30,000 (VAT 없음)
사무실, 창고 및 냉장고, 냉동고 공사	- 공사 실시 (가맹점 자율에 의함)	D-28 ~ D-15 (14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14 ~ D-12 (3일)	
영업 준비	- 위생교육 - 인허가 및 사업자등록	D-11 ~ D-1	
영업 시작	- 가맹점 개설 및 영업 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가맹본부 소재지의 관할법원** 또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기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만 점포환경개선을 권장하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간판 교체 비용	가맹본부 부담 없음		○ 사업 특성상 특별히 간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인테리어 공사 비용	가맹본부 부담 없음		○ 사업 특성상 특별히 인테리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냉장고 및 냉동고의 수선 또는 교체 비용	가맹본부 부담 없음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은 가맹점사업자가营业을 위해서 당연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가맹본부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VAT 포함)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관측 지원	가맹본부 담당자가 관측활동을 지원	가맹사업자가 요청 시, 협의	협의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최초 개점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방문하여 3일간 점포운영교육 실시	가맹본부 부담	문의 : 영업팀(031- 419-7728)
수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가 요청 시 가맹본부의 협의	가맹본부 부담	문의 : 영업팀(031- 419-7728)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상적인 경영지도 외에 특별한 경영상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에코푸드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점포운영교육	가맹사업 시스템 소개 영업 및 판촉 상품 지식 계약서 작성 발주 방식 고객 관리	실습 교육	3일	필수
수시교육	시장 분석 경쟁 분석 상품 정보	집단 강의	1일	선택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에코푸드시스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 천원, VAT 포함)	비고
점포운영교육	3일	없음	최초 개점 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 19조에 따라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및 영업개시일 10일 이전에 점포운영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해당 사항 없음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 사항 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VAT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해당 사항 없음	

<별첨 1-1> 재무상태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1-2> 손익계산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2-1> 가맹점 내역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3-1> 상품 구입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